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합528044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이정현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르네상스 담당변호사 엄승하

변 론 종 결 2021. 12. 23.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8,150,914원 및 그 중 275,759,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31.부터, 368,700,260원에 대하여는 2021. 3. 30.부터 각 2021. 5. 17.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73,290,304원에 대하여는 2021. 6. 30.부터, 380,401,350원에 대하여는 2021. 9. 30.부터 각 2021. 11. 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8.부터,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 1)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각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소외 회사 발행 주식1) (이하 ‘소외 회사 주식’이라 한다) 인수

-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2018. 10. 30.경 전환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신주 269,541주를 인수하였다.
- 2) 원고는 2019년경 위 신주 중 일부를 처분하여 소외 회사 주식 263,46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 1) 원고는 2020.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263,467주 전부를 피고에게 주당 5,203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에 따르면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일정에 따라 제1회 변제기의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포함된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로부터 해당 주식을 이전받도록 되어 있었다(가령 피고가 2021. 3. 29. 지급해야 하는 제2회 매매대금

368,700,260원은 원금 364,21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30.부터 2021. 3. 2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490,260원을 합한 금액이다).

회차	변제기	대상주식 수	매매대금		
			원금(= 대상주식 수 × 5,203원)	이자	매매대금 합계
제1회	2020. 12. 29.	53,000주	275,759,000원	-	275,759,000원
제2회	2021. 3. 29.	70,000주	364,210,000원	4,490,260원	368,700,260원
제3회	2021. 6. 29.	70,000주	364,210,000원	9,080,304원	373,290,304원
제4회	2021. 9. 29.	70,467주	366,639,801원	13,761,549원	380,401,350원
합계		263,467주	1,370,818,801원	27,332,113원	1,398,150,914원

3)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5조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외에 위반행위 1회당 20,000,000원을 위약벌로 즉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 12. 1.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소회 회사 주식 700,000주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에서 정한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이전의 이행제공

1) 원고는 2020.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21.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21.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질권 실행 예정 통지

원고는 2021. 1. 19. 피고에게 '2021. 1. 29.까지 2020. 12. 29.자 주식매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 변제에 총당할 예정임을 알린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계약의 매매대금 및 위약금 합계 1,478,150,914원(= 제1회 매매대금 275,759,000원 + 제2회 매매대금 368,700,260원 + 제3회 매매대금 373,290,304원 + 제4회 매매대금 380,401,350원 + 제1회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20,000,000원 + 제2회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20,000,000원 + 제3회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20,000,000원 + 제4회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20,000,000원) 및 그 중 제1회 매매대금 275,759,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31.부터, 제2회 매매대금 368,700,260원에 대하여는 2021. 3.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5.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제3회 매매대금 373,290,304원에 대하여는 2021. 6. 30.부터, 제4회 매매대금 380,401,350원에 대하여는 2021. 9. 3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제1, 2회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합계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1. 5. 18.부터, 제3, 4회 매매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합계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 12. 1.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소회 회사 주식 700,000주에 관하여 이 사건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2조에서 정한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1. 1. 19. 피고에게 '2021. 1. 31.까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 변제에 총당할 예정임을 알린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 위약벌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적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물적 담보권을 실행하여 금전채권에 총당할 것인지는 그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물적 담보의 제공을 이유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이 종국적으로 타당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을 변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전적으로 또는 우선적으로 이 사건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에 총당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약정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정경희, 판사 정덕기

1)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식이다.